2026. 10.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김 제 시 의 회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김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113

발의연월일 : 2026. 10. 06.
발 의 자 : 김진수, 김영자, 손정애 의원

1. 제정이유

○ 김제시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자치입법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이념 등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의장단, 의원, 사무국 등 의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라. 교섭단체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부터 제43조까지)

마.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 (안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사. 회의록 및 의정활동의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 부

라. 비용추계서 대상 여부 : 부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붙임자료

가. 조례제정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련 법령 발췌서

라. 타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서

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의회 기본 조례 현황

사. 타 시·군의회 조례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시민과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 전체의 대표로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의회의 구성과 조직

제6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7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선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해야하며,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순서는 성명순에 의하고 기표방법의 투표도 이에 준한다. 이 경우 선거 전일 18시(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견발표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

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선출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제16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을 지나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출석한 때, 그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제18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따라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23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

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25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제2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28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안 발의·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위원회 또는 시장이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의·제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를 할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제31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3. 경제도시위원회 7명 이내

③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성장전략실, 홍보축제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보건소,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제도시위원회

가. 새만금경제국,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3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4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3조(위원회 준용규정)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

제4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6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7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48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50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및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하되,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질문의원은 2인, 질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④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시정질문 3일 전(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시정질문 신청서)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3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인사청문)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의회의 예산)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7장 회의록 및 의정활동의 공개

제57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토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8조(회의록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

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9조(자구의 바로잡음과 다른 의견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바로잡음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바로잡음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교정이 완료되기 전의 임시회의록은 작성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교정이 완료된 회의록은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정례회는 6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⑦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61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2조(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 및 정회 등 의사 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상 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김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3.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후 보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신청직위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제시의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정 견 발 표 신 청 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시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제시의회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시정질문 신청서

신 청 의 원		서 명		선거구	
발 언 일 자		답 변 자	김제시장	소요시간	
발 언 제 목					
발 언 요 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 의정팀장 박성용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 관련 법령 발췌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 · 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

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 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 · 도의회와 시 · 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 · 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

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 ·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 ·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 · 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타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부서 의견 조회 결과보고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의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례안명 :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2. 의견조회 기간 : 2026. 9. 23. ~ 2026. 9. 28.(5일간)
3. 의견조회 방법 : 의회사무국-5111호(2026. 09. 23.)로 공문 협의
4. 의견조회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최대환	행정복지 문위원	전 김형원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6. 9. 30. 이영석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5207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738 팩스번호 063-540-2777 / cdh7604@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일)

김 제 시 의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안 명 : 김제시의회 기본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09. 22. ~ 2026. 09. 28.(6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끝.

지원관	최대한	행정복지 문위원	전 김형원	의회사무국장	전결 2026. 9. 30. 이영석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5211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김제시청)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2738 팩스번호 063-540-2777 / cdh7604@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의회 기본 조례 현황

구분	제정현황		비고
	여	부	
전북자치도 의회	○		2016. 01.
전주시의회		○	
군산시의회		○	
익산시의회		○	
정읍시의회		○	
남원시의회		○	
완주군의회		○	
진안군의회		○	
무주군의회		○	
장수군의회		○	
임실군의회		○	
순창군의회		○	
고창군의회	○		25. 08.
부안군의회	○		22. 12.

□ 타 시·군의회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2016-01-29 조례 제 4217호
(일부개정) 2025-12-12 조례 제 59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2조(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도민전체의 대표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회의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2024. 5. 31.>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목개정 2021. 12. 31.]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2024. 5. 31.>

제7조(회기운영)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2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 및 임시회)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3. 25, 2021. 12. 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 교육감 및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 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 12. 31.>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1. 12. 31.>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부의장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2. 10. 21.>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실시한다. <신설 2016. 11. 4,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1. 12. 31.>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6. 11. 4,2021. 12. 31.>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이때 부의장 선거는 1부의장 선거와 2부의장 선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11. 4., 2021. 12. 31., 2022. 10. 21.>

⑥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전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4, 2021. 12. 31. 2022. 10. 21.>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6. 11. 4, 2021. 12. 31., 2022. 10. 21.>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및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 게재 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신설 2022. 10. 21.>

⑨ 정견발표는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0. 21.>

제13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1. 4, 2021. 12. 31.>

제14조(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의 지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의장 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15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개정 2021. 12. 31.>

제16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장 의원

제19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1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1. 12. 31.>

제22조(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23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지급액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3. 11., 2023. 12. 8.>

제24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계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가가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31.>

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6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8. 11.>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③ 삭제 <2023. 8. 11.>

④ 삭제 <2023. 8. 11.>

⑤ 삭제 <2023. 8. 11.>

제27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8. 11.>

제28조 삭제 <2023. 8. 11.>

제29조 삭제 <2023. 8. 11.>

제30조 삭제 <2023. 8. 11.>

제31조 삭제 <2023. 8. 11.>

제32조 삭제 <2023. 8. 11.>

제33조 삭제 <2023. 8. 11.>

제33조의2 삭제 <2023. 8. 11.>

제33조의3 삭제 <2023. 8. 11.>

제34조 삭제 <2023. 8. 11.>

제35조 삭제 <2023. 8. 11.>

제36조 삭제 <2023. 8. 11.>

제37조 삭제 <2023. 8. 11.>

제38조 삭제 <2023. 8. 11.>

제39조 삭제 <2023. 8. 11.>

제40조 삭제 <2023. 8. 11.>

제41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42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3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2. 10. 21.>

1. 삭제 <2021. 12. 31.>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본부장, 담당관, 실·과장급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사람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전북자치도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인 사람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제목개정 2021. 12. 31.]

제44조(도정 등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도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순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2.>

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12.>

⑥ 의장은 의원의 도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정질문 의원 수와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⑦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도정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96시간 전(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

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문서가 아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45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도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44조에 의한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타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다. <단서신설 2016. 3. 25,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2명 이하로 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 할 수 없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7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48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49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

2. 31.>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에의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5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휴대용 전화기·호출기 등을 지참하여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제53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4조(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7일 전에 허가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단순보도용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두신청에 따라 구두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전라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전라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